

광주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84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임화영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전라남도 화순군으로부터 'D사업'을 도급받아, 2020. 12. 23. 피고에게 위 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19,828,000원에 하도급 하였다(이하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C이 발주자인 화순군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금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인 피고에게 선금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21. 4.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21. 4. 13. C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선금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경 C의 대표이사인 E와 C의 인수를 논의하면서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소장의 투입 및 이 사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부탁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의 실질적 대표인 F, 위 E, 피고의 대표이사인 G, H(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한 임시 현장소장)은 2021. 6. 5.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공사의 재개와 관련한 협의(이하 '2021. 6. 5.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1. 6. 7. '입금통장 표시내용'을 'C(주)'로 표시하여 피고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고[피고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상으로는 '거래기록사항'란에 'C(주)'라고 표시됨],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1억 6,000만 원을 더 대여하여 주었고, C로부터 위 4,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을 합한 2억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사. 그 후 피고는 C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6. 16.경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2021. 6. 5. 협의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 및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하려면 우선 돈이 필요하다. 돈을 지급하면 필요한 자재 및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하였고,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용도를 기망하고,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하여 공사를 마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위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선택적으로, 조건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반환 청구 : 원고와 피고는 2021. 6. 5. 협의 당시 피고가 징크가공기계 등을 반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돈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를 하는 시늉만하다가 2021. 6. 17. 이후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약정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3) 선택적으로, 약정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 피고가 원고와의 위 2)항 기재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C과 화순군 사이의 원 공사계약에 해지되었는바, 결국 피고의 위 약정의무의 이행은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021. 12. 1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위 약정을 해제하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1. 6. 5. 협의 당시 공사재개와 동시에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위 협의 당시 C은 2021. 6. 8.까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C이 이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 같은 달 16. 재개한 공사를 다시 중단한 것이다. 또한 피고가 지급받은 4,000만 원은 C이 원고로부터 빌려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3. 판단

가. 기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공사 재개 후 자재 및 징크가공기계 반입에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재개 당시 당장 징크가공기계의 반입이 필요한 공정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2021. 6. 5. 협의 당시 협의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사자인 C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금금 및 기성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재개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향후 자재 내지 기계 반입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은 일반 거래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한편 이 사건 공사 재개 후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부 자재가 반입되기도 하였던 점, ④ 당시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피고가 공사 재개의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요구하는 이상 그 용도가 징크가공기계의 반입이 아니더라도 원고로서는 공사 재개를 위해 일정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사 재개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중단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약속한 하도금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바, 피고가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5. 협의 당시에 피고에게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위 4,000만 원을 향후 진행될 공사에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6. 5. 협의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공사 재개 후 자재 및 징크가공기계 반입에만 사용할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거나 나아가 원고가 이에 속아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조건 불이행에 따른 약정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1. 6. 5. 협의 당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징크가공기계 등을 반입하여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돈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를 다시 중단함으로써 약정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21. 6. 5. 협의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6. 5. 협의 당시 원고와 C 측은 피고에게 공사 재개를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C에서 2021. 6. 8.까지1)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C의 대표 E은 2021. 6. 11. 피고와 통화하면서 같은 달 15.(화요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겠다고 다시 약속한 사실, 그러나 C은 같은 달 15.이 경과하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6. 16.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중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5. 협의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는 2021. 6. 5. 협의 당시 C이 약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시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일방적으로 조건(내지 약정한 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1. 6. 25. C의 I공제조합 출자증권에 관하여 압류명령을 받음에 따라 C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출자증권의 압류는 C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기한2) 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위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피고 이외의 다른 공사업체로부터 먼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약정 이행불능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원고는, 2021. 6. 5. 협의 당시 피고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하던 중 C와 화순군 사이의 원 공사계약에 해제됨에 따라 피고의 약정의무의 이행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약정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1. 6. 5. 협의 당시 이 사건 공사 재개 직후 징크가공기계를 반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2021. 6. 5. 협의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후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것은 C이 이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를 두고 피고가 공사 재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약정을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명화

1) 피고가 2021. 6. 9. H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하였던 점(갑 제9호증), 피고가 2021. 6. 11. C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던 점(을 제10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2021. 6. 8.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초 2021. 6. 8.이었으나, E의 요청에 따라 2021. 6. 15.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